

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

1.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체부지 확대 지정은 당초 화곡동 산 204-5번지, 3,500㎡인 원안으로 의결하되,
2. 2015~2016 시·구의회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지역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실시해주시기 바람.

2024. 3. 5.

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